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순자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22. 09. 30.

발의의원 : 황순자,김재용,
박소영,박종필,
손한국,이성오,
이재숙,조경구,
허시영 의원
(9명)

1. 개정 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022.6.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목적 및 일부 용어 뜻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수정 및 신설함(안 제3조)

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붙임)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필요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구직 정보 수집·제공 및 구인·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여성맞춤형 창업지원사업
7.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8.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생략)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생략)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